

2023년 창업중심대학 모집공고

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(예비)창업자 발굴·육성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2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※ 본 공고는 [예비]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,
[예비]창업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'23년 3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.

1

사업 개요

☐ 사업 목적

-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대학발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

☐ 선정 규모 : 총 3개 대학 이내

- '22년 선정 창업중심대학(6개*) 소재지(광역시·자치단체 기준)를 제외, 권역별(수도권/충청권/호남권/대경권/동남권) 최대 1개 선정

* 강원대학교(강원), 대구대학교(경북), 부산대학교(부산), 한양대학교(서울), 전북대학교(전북), 호서대학교(충남)

※ 선정규모는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안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☐ 운영기간 및 예산

- (운영기간) 3년간('23~'25년) 운영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(2년) 예정

*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 (협약 기간 13개월 내외)

**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○ (지원예산) 연 76.5억원 내외 (최대)

- *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,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,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예산은 변경(차등지급)될 수 있음

< '23년 창업중심대학 지원내용 및 예산구성(안) >

구 분		내 용	예 산
창업기업 사업화 지원		•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	56억원 내외
		• 실험실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	8억원 내외
주관기관	창업프로그램 운영비	•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	5억원 내외
사업비	전담조직 운영비	•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 등	7.5억원 내외

※ 지원규모는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안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 자격

- 창업지원 전문인력 (조직), 협업 네트워크,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

- 신청 대학은 지역 내 타 대학, 창업지원 기관 등과 협력 기관*으로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

* '창업중심대학-협력기관'의 구조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, 협약은 전담기관과 창업중심대학(1개 기관) 간 진행하며, 총 사업비 관리·집행은 모두 창업중심대학에서 일괄 수행 (협력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)

< 창업중심대학 신청 자격 >

1.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 (학교의 종류) 1, 2호에 해당되는 대학

2. 『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』 제3조 1, 2, 3,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

※ 대학 본교(캠퍼스 포함)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

※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'대학' (본교 또는 분교) 명의로 가능

- '22년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의 소재지(광역시방자치단체 기준)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본교(캠퍼스 포함) 또는 분교

- 동 사업에 신청하는 본교(캠퍼스 포함) 또는 분교에 해당 대학의 창업지원기능 결집, 기존 창업지원조직 설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며,
- 동 사업 선정 시 전담조직은 해당 본교(캠퍼스 포함) 또는 분교 내 필수 위치하고, 회계처리 등 운영사항 전반이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(협약체결 후 수행 주체(소재지) 변경 불가)

< '23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신청 가능 지역 >

권역 구분	수도권	충청권	호남권	대경권	동남권	→ 최종선정
신청 가능 광역시자체 (11개)	경기	대전	광주	대구	경남	
	인천	세종	전남		울산	
		충북	제주			3개 (권역별 최대 1개)

□ 신청 제외 대상

-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

- ① 『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』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③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'협약의 해약'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'실패'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
-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
- 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⑥ 교육부 『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』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3

신청 요건

1 (예비)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

※ 내·외부 재원 투입 시, 확약서 또는 공문(별도 양식 無)을 미제출하거나 협약기간 내 '창업중심대학 사업(기업)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'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

- (투자금) 지원기업 투자를 위한 **10억원 이상**의 투자재원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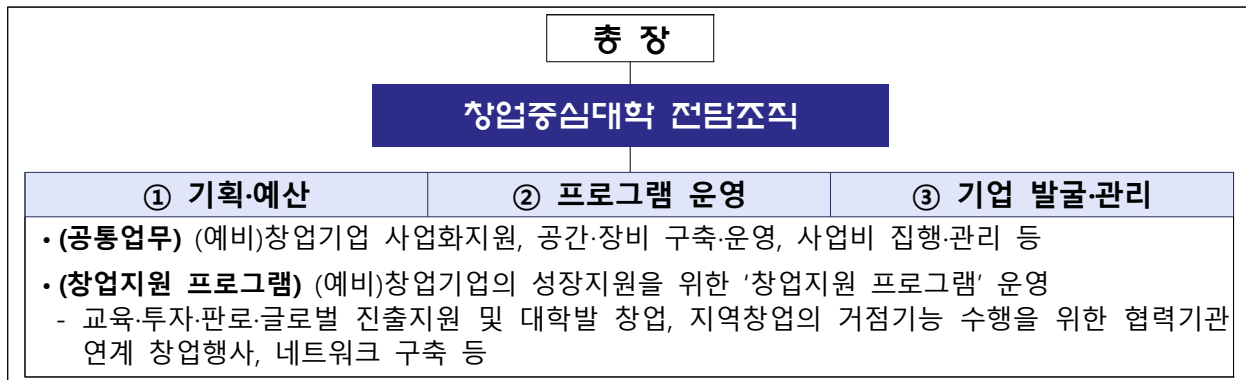
* 최소 10억원 이상의 투자금은 당해연도('23년)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 선정기업에 투자 하되, 10억원 초과분은 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 참여기업('22~'23년)에도 투자 가능

- 외부 투자기관의 재원을 창업중심대학 전용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인정하나, 대학별 자체 자본금 1억원 이상 필수 조성
- * 신청기관의 자체 자본금을 2.5억원 이상 투자금 조성 시 가점 부여
- (대응자금) 지자체 및 대학 자체재원 등을 활용하여 (예비)창업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한 최소 3억원 이상의 대응자금 (현금+현물) 마련
- * 최소 대응자금(3억원)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추가 대응자금 조성 시 가점 부여
- 대응자금 총액 중 80%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투입해야 하며, 필요시 20%는 현물*로 대응 가능
- *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 전담인력 (참여율 100%) 인건비로 계상 가능

2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·운영
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32조에 의한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
- *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은 신청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, 타 사업단 및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창업지원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

<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구성 (예시) >



- (예비)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전담인력 구성
- 전담조직의 장 (1인) 외, 창업중심대학 사업 전담인력으로 최소 8인 이상의 조직원 (전체 9인 이상)을 구성
- * 전담인력은 타 지자체,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'창업중심대학 사업'만을 '100% 수행하는 인력'을 의미
- 전담조직의 장*은 창업 (또는 창업관련분야)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·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
- * 대학 교무위원 또는 학무위원급으로 구성

- **전담인력** (전담조직의 장 외) **구성의 60% 이상**은 반드시 창업 관련분야* **경력이 3년 이상인** 자로 구성

* 창업기업 관리·지원업무 수행,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, 대학 산학협력단, 전국 창경센터 등 창업유관기관 근무 이력 (음식점 등 소상공인 창업경력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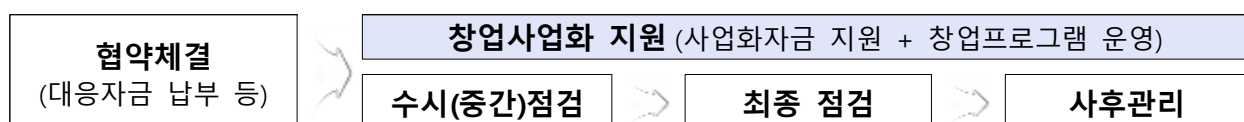
-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**행정실(사무공간) 필수 구축** (70m²(약 21평) 이상)
 - 전담조직의 장과 전담인력은 동일한 사무공간에 근무해야 하며, 일부가 분리되어 별도 부서 및 센터 (타 지역 포함)에서 근무 불가
-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·운영을 위한 신청요건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
4 창업중심대학 의무 및 역할

1 (예비)창업기업 선발 및 사업화 지원

- **(홍보 및 선발)** (예비)창업기업, 실험실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 및 우수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 운영 등
 - **(사업화 지원)**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지원 인프라(공간·인력·장비 등) 등을 활용하여 (예비)창업기업, 실험실 창업기업의 전주기 창업 사업화 지원
 - 선정기업의 사업계획추진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승인, 점검, 지원성과 관리 등을 수행
- * 연간 85개사 내외 (예비)창업기업, 실험실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예정이며, 신청·접수 경쟁률 및 T/O에 따라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-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및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 권역 내 (예비)창업기업, 실험실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선발

< (예비)창업기업 지원체계 >



2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신청기관이 보유한 역량, 지역 환경, 외부 여건 등을 활용하여 (예비)창업기업, 실험실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·운영

<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>

구성 내용			
▶ (기본 프로그램) 수요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* 4개 (①~④)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여 창업중심대학별 최소 5개, 최대 8개 프로그램 설계			
① 교육 지원	② 투자유치 지원	③ 판로개척 지원	④ 글로벌 진출 지원
• 시제품 개발, 고도화 • 아이디어 경진대회	• IR·데모데이 • 투자 컨설팅	• 공동 기획전 • 수요기업유통채널 발굴	• 현지 전문가 매칭 • 글로벌 진출 포럼
▶ (자율 프로그램) 지역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* 청년주간 창업행사를 포함하여 창업중심대학별 최소 1개, 최대 2개 프로그램 설계			
창업문화 확산		기타	
• 지역별 청년주간 창업행사, 지역창업 네트워킹 등		• 원스톱 창업상담창구, 스타트업 인턴십 등	

- (기본 프로그램)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
 - 교육 지원 : 분야별 (기초, 제품개발, 기술 고도화, 실증 등) 맞춤형 창업 교육, 현장실습, 아이디어 경진대회, 기술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
 - 투자유치 지원 : 투자유치프로그램 (IR, 데모데이 등), 투자 컨설팅 (진단, 전략 수립, 자료 제작 등) 등
 - 판로개척 지원 : 수요기업 및 유통채널 발굴 지원, 온오프라인 공동 기획·판매전 운영 등
 - 글로벌 진출 지원 : 해외시장 진출프로그램 (현지 전문가 매칭 등), 글로벌 진출 포럼 및 해외 전시회 공동참여 지원 등
- (자율 프로그램) 지역별 창업생태계의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의 창업지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
 - 창업문화 확산 : 권역 내 대학(창업대학원)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청년주간 창업 행사 등
 - 기타사항 :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, (예비)창업기업이 상시 이용 가능한 상담창구 구축 등

5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2년 12월 22일 (목) ~ 2023년 1월 11일 (수), 16:00까지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(신청방법)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 →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
①회원가입(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) → ②K-startup 접속→ ③사업신청관리 클릭 → ④사업 신청 클릭 → ⑤'2023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' 클릭 → ⑥신청서 작성 필수값 동의(개인정보 등) → ⑦기본정보(일반현황 인력정보 등) 입력 → ⑧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300MB 유의) → ⑨제출 → ⑩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 확인(접수상태 '제출완료')

*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진행

- (제출서류) 제출 공문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참여 전담인력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 등

6

평가 및 선정 절차

□ 평가 방법 및 절차

- 2단계 평가 (① 서류평가 → ② 발표평가)로 운영하며, 서류평가 점수 50%, 발표평가 점수 50%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
*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

- 서류평가 :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 (3개)를 고려하여 11개 내외* 발표평가 추천

* 동 공고에 신청가능한 11개 광역지자체별 최대 1개 대학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
- 발표평가 : 지역 내 창업 거점화 가능성, 대학발 창업 활성화 의지 등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 계획을 위한 전반적인 역량 종합평가

* 평가시간 : 30분 이내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 이내)

**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변경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, '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의 장'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
- 단계별 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

< 창업중심대학 신규 주관기관 선정 평가일정(안) >

사업 신청·접수	서류평가	발표평가	최종 선정
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	사업계획서 평가	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	K-Startup 누리집 공고
~'23. 1월 11일	~'23. 1월	~'23. 2월 초	'22. 2월 중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
**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□ 최종 선정

-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,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심대학 최종 선정 확정

* 선정평가 결과 신청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이 본 사업 운영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, 선정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(안)

< 창업중심대학 선정평가 기준(안) >
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기본요건 충족 여부		▶ 신청요건 충족 여부 (전담조직, 재원, 인프라, 프로그램 등) ▶ 신청자격 충족 여부 (신청대학 기준 및 신청 제한 해당 여부)	(적/부)
서류 평가	사업 의지 및 역량	▶ 대학의 사업 추진 의지 ▶ 창업친화적 제도(창업연계전공 운영, 교원 인사제도 등) ▶ 창업 지원사업 운영실적	55
	창업중심대학 비전(전략) 및 계획	▶ 창업중심대학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등 ▶ 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등	45
	가점	▶ (최대 1점) 투자금을 자체 재원으로 2.5억원 이상 확보한 경우 ▶ (최대 2점) 최소요건(3억원) 외 대응자금(현금) 1억원 이상 (1점) 또는 2억원 이상(2점)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경우	최대 3점
합 계			103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발표 평가	창업중심대학 비전 및 전략	▶ 창업중심대학 비전 및 전략, 중장기 목표 및 달성전략 등 ▶ 창업중심대학 성과관리 방안 등	15
	생애 전주기 창업지원	▶ 지역 및 대학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계획 ▶ 유망 창업기업 대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계획	35
	권역 내 창업 거점구축 계획	▶ 창업 프로그램 로드맵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▶ 창업기업 대상 기본/자율프로그램 운영계획 ▶ 협력기관 연계 등 지역창업허브 운영계획 등	45
	사업관리	▶ 사업비 사용계획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	5
합 계			100

* 상기 선정평가 기준(안)은 실제 평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신청·선정기관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 신청은 신청대학의 대표자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- * 신청기관의 장 (협력 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)
-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접수 기간 내 (~'22.1.11.(수), 16:00)에 필히 완료해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-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,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재원 (투자금 및 대응자금)의 확보 (입금 완료)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, 전담조직 설치 등 그 외 신청요건은 3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- 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- **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, 중심대학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

- 주관기관은 타 대학,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협약은 전담기관 (창업진흥원)과 중심대학 간 진행
 - * 모든 사업비는 신청기관에서 일괄 관리·집행 (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)
 - ** 협력기관과 참여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"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주관기관"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- 선정된 대학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사업비 지출 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사업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내에 대응자금 및 투자금 미집행 시,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주관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유사 취지의 정부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예산 등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해 참여의 제한, 예산 감액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시, 선발하지 않거나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·초기·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과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모집공고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수행은 불가함
 - * 예비·초기·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1개 사업만 수행할 수 있음
 - ** 본교(캠퍼스 포함), 분교, 산학협력단, 기술지주 등은 대학(분교)의 실질적 소속으로 보며, 예비·초기·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

☐ 문의처

- (신청·접수 시스템 문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 - (정책 문의)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-204-7952, 7646
 - (사업신청 문의)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044-410-1812~3, 1817~9
- ※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(Quick Menu - 상담하기)

☐ 사업설명회

- (개최일정) '22. 12. 27.(화), 15:00 ~ *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- (접속링크) Zoom 플랫폼 활용(회의ID 894 7804 3369)